

일하다 생긴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을까요?

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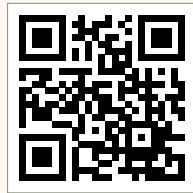
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?

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

☎ 02-735-1919 | www.goldenjob.or.kr

업무시간 월-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(주말 & 공휴일 제외)

센터위치 [03147]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(경운동) 지하철 ③호선 안국역 ⑤번 출구



최저임금

일자리를 찾고 계시나요?



나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알고 싶어요.

고용노동부 [최저임금 모의계산기]를 활용해 보세요!

www.moel.go.kr



☑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
☑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**최저임금 이상의 임금**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	2022년	2023년
시급	9,160원	9,620원
일급(1일 8시간 기준)	73,280원	76,960원
월급(1주 40시간 기준)	1,914,440원	2,010,580원

☑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합니다.
단,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.



단순노무 종사자

경비원, 청소원, 주차관리원, 주방보조원, 육아도우미, 배달원 등

감정노동자, 산재, 직장내괴롭힘

근무 중 어려움이 있으신가요?

감정노동자 보호법

☑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.

☑ 경비원, 요양보호사, 판매관리원, 가사관리사, 택시운전원도 감정노동자입니다.

상담과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?

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☎ 02)722-2525

산업재해보상보험법

☑ 일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다면,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산재보상 신청·문의가 필요하다면?
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

☑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.

- 괴롭힘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합니다.
-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해결절차를 이용합니다.
- 고용노동부·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상담이 필요하다면?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☎ 1522-9000

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? 직업트라우마센터 ☎ 1588-6497

당신의 일터는 하십니까?

시니어 노동환경
체크리스트



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

체크 1 근로계약서

출근 첫날,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?



제가 받은 근로계약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
고용노동부 [표준근로계약서]와
비교해 보세요!

www.moel.go.kr



체크 2 근로시간, 휴게시간, 연차유급휴가

열심히 일하고 잘 쉬고 계신가요?



근로계약서에 작성한
근무내용과
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.

서울시에서 무료상담받으세요!

서울시 통합노동상담

☎ 1661-2020 | www.seoullabor.or.kr



체크 3 임금명세서, 주휴수당

월급 받으셨나요?



임금을 못 받았다면?

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
신고해 주세요!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☎ 1350 | 1350.moel.go.kr



체크 4 퇴직, 실업급여

퇴사를 준비하시나요?



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를
당했습니다.

지방노동위원회에서 도와드립니다!

서울지방노동위원회

☎ 02)3218-6077~9 | www.nlrc.go.kr



☑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! 작성하고, 1부를 받아야 합니다.

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, 살펴봅시다!

첫째 __ 사용자 이름이나 회사명이 잘 적혀 있나요?

둘째 __ 채용정보에서 보았던 근로조건과 동일한가요?
근무시간, 근무요일, 휴게시간 등

셋째 __ 임금에 대해 정확히 쓰여있나요?
임금구성항목, 계산 방법, 지급 방법, 금액 등

넷째 __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한다고 쓰여있나요?



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어도
근로자는 책임이 없으며,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.



☑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모두, 근로시간입니다.

준비 시간, 정리 시간,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, 근무 중 용변 시간 등도 근로시간입니다.

법정 근로시간 **1일 8시간, 1주 40시간**

☑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,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4시간 근무 시 **30분 이상 휴게**

8시간 근무 시 **1시간 이상 휴게**

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인 경우,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4년 미만
발생일수	11일	15일	15일	16일
기준	매월 개근	1년간 80% 이상 출근		



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다음날 비번 일까지 쉰다면,
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.

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, 일정한 날짜에, 직접 돈으로, 전체 액수를 받아야 합니다.

☑ 임금과 함께 임금명세서도 꼭 받아야 합니다.

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!

첫째 __ 임금 총액, 항목별 금액 - 기본급, 각종수당, 상여금 등

둘째 __ 임금계산 기초사항 - 총 근로일(시간), 연장근로시간 등

셋째 __ 임금공제 내역 - 근로소득세, 4대 보험료 등

☑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	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
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 8시간×9,160원=73,280원 *근로조건: 1일 8시간(주 40시간) 근무 *급여: 시급 9,160원	1주 근로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× 시급 21시간÷40시간×8시간×9,160원=38,472원 *근로조건: 주 3일(21시간) 근무 *급여: 시급 9,160원

☑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,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.

☑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.

퇴직금 지급 조건
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
-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

퇴직금 산정방법

퇴직금 = 30일분 평균임금 × 계속근로년수(재직일÷365일)

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수급자격

첫째 __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
둘째 __ 이직할 수밖에 없는 (비자발적) 사유가 있어야 함